서울특별시 전략신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5

2022. 12. 2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17일, 이숙자 의원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2. 12. 2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이숙자 의원)

1. 제안이유

서울시는 일정 지역내에 집적도가 높은 산업과 전략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서울의 전략산업 육성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지구 지정 이후에도 진흥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사실상 지구가 미운영 되는 등 제도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지구 지정 및 진흥 계획 수립 절차 등을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규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정의에 대해 정비함(안 제2조제4호).
- 나. "권장업종" 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제7호).
- 다.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변경 및 취소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제6항).
- 라. 진흥지구의 변경 시에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제7항 신설).
- 마. 진흥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 신청 절차를 함께 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1항).
- 바. 진흥계획 제출 기한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 사.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변경 및 취소 등에 대해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 아. 진흥지구의 변경 및 해제에 대해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개정안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진흥지구 지정 신청과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변경・취소 등에 관한 절차 등을 개선하고, 관계법령 개정¹⁾에 맞춰 조례에 인용된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발의됨.

나. 산업 · 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는 주거・ 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등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를 서울특별시장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제37조제1항제7호).
 - 같은 법 시행령은 '개발진흥지구'를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화하고 있음(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
-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구 체계 정비에 따라 개발진흥지구(9호 →7호)의 조문 변경(2017.4.)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 중 유통개발진흥지 구는 삭제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통·폐합되면서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로, '공업기능'은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으로 개정됨(2012.4.).

제정해 집적도가 높거나 권장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²)'와 '특정개발진흥지구³)'로 우선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음.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현재 종로 귀금속 지구를 포함해 8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진흥계획이 수립된 5개 지구내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 >

연번	유형	지구명	위 치	면적(㎡)	대상지 선정일	지정일	진흥계획	지구단위 계획	비고
1	특정	종로 귀금속	묘동 53번지 일대	140,855	'09.4.24.	'10.1.28.	'13.01.03.	'16.07.21	
2	산업	성수 IT	성수동2가 일대	539,406	'09.4.24.	'10.1.28.	'13.01.03.	'21.10.14	
3	특정	마포 디자안출판	서교동 395번지 일대	746,994	'09.4.24.	'10.1.28.	'13.01.03.	'16.04.28	
4	"	동대문 한방	용두동, 제기동 일대	211,355	'10.6.3.	'13.7.26.	'15.06.11.	수립 중 ('24년 예정)	
5	"	면목 패션	면목동 136번지 일대	292,000	'10.6.3.	'16.4.28.	'17.07.24.	'22.1.26.	
6	"	중구 인쇄	충무로 4, 5가 일대	303,240	'10.6.3.	'17.7.13.	수립 중 ('23년 예정)	_	
7	"	여의도 금융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387,469	'09.4.24	'10.1.28.	수립 중 ('22년 예정)	_	
8	"	중구 금융	삼각동 50-1번지 일대	281,330	'09.4.24	'10.1.28.	수립 중	_	

○ 지정현황 : 8개 지구(5개 진흥계획 수립·고시, 3개 진흥계획 수립 중)

* 대상지 선정후 미추진(3개소) : 중구 디자인·패션('10.6월), 마포 웨딩('10.6월), 강남 디자인('10.6월)

** 신규 대상지 선정(1개소) : 양재 ICT('21.12월)

²⁾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³⁾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진흥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절차 개선(안 제12조제1항ㆍ제3항)

○ 안 제12조제1항은 구청장이 진흥지구 지정 신청 시에 진흥계획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진흥계획 제출 시기를 "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지정대상지 선정일 로부터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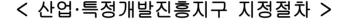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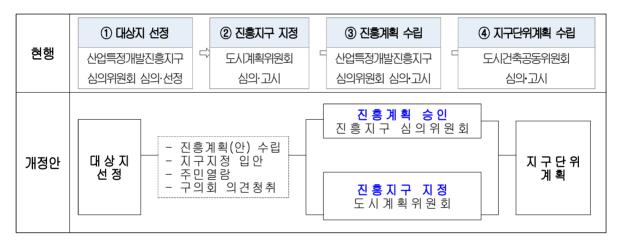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제11	제12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조에 따라 시장이 진흥지구를 지정	
할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u>수립하여</u>	<u>수립하여</u>
<u>야</u> 한다.	지정 신청과 함께 진흥지구 심의위
	원회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
	<u>010</u>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진흥계획을 수	③
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해당 진흥지구 <u>지정일</u> 로부터	<u>지정대상지 선정일</u>
1년 이내에 시 <u>장의 승인을 받아야</u>	<u>제출하여야</u>
한다.	

현재는 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도시계획
 위원회 진흥지구 지정 심의 단계에서 계획 미비, 검토자료 부족

등의 사유로 심의가 보류되는 등 진흥지구 지정을 거쳐 진흥계획 수립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진흥계획을 지구 지정과 동시에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 심의 시 효율적 심의가 가능하고 대상지 선정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폭 단축(평균 8년→4년)되는 효과가 있음.





- 이럴 경우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ICT) 거점 대상지로 새로 선정된 양재(2021.12.) 등의 지구 지정과 진흥계획이 조기에 마무리 됨으로써 서울시의 신산업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진흥지구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지구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시세 감면) 마련과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정책이 동반되어야 함.

- 라. 업종변경 유연화, 부진지구 취소 등 제도 정비(안 제2조제7호, 제11조 제6항, 제14조제1항)
 - 안 제2조제7호는 권장업종의 정의를 "진흥지구 지정 시 고시한 업종" 에서 "진흥계획 수립 시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함.
 - 이는 대상지 선정이후 진흥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경제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권장업종을 유연하게 변경함으로써 진흥지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임.
 - 안 제11조제6항 후단은 "선정된 지정대상지의 변경 또는 취소" 절차를 신설하고, 안 제14조제1항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이를 추가함.
 - 진흥지구 변경사항은 안 제11조제7항 및 안 제14조제1항제2호로 이동하여 신설함.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 ①	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직접 또는 제4항의 규정에	6
따른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대	
상지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지정된 진흥지</u> 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신 설>

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 원회 구성·운영) ① (생 략)

1. 진흥지구 <u>지정대상지의 선정 및</u>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

<신 설>

<u>2.</u> ∽<u>4.</u> (생 략)

② ~ ⑧ (생 략)

-----. 선정된 지정대 상지를 변경 또는 취소 -----

① <u>시장은 지정된 진흥지구를 변경하</u> <u>고자 하는 때에는 진흥지구심의위</u>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 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 <u>지정대상지의 선정·변경</u>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 (8) (현행과 같음)

 이는 진흥지구 지정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일부 대상지(중구 디자인·패션, 강남 디자인, 마포 웨딩)4)에서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지구 대상지의 취소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대상지 해제가 미추진된 지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⁴⁾ **중구 디자인·패션(DDP** 일대) : 앵커시설 부지 미확보로 지구 지정이 무산되었으며, '동대문 뷰티패션'으로 명칭 변경하여 재추진 예정임.

강남 디자인(신사동 가로수길 일대) : 업종변화에 따라 강남구의회 반대로 후속 절차 추진 중단.

마포 웨딩(아현, 염리, 대현, 북아현동 일대) : 마포구·서대문구 이견으로 후속 절차 추진 중단

 다만, 위원회 심의사항인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5)과 중복돼 혼란이 초래 될 소지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위원회 심의가 선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

마. 인용 법률의 현행화(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 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조례에 인용된 "법 제37조제1항제 9호" 조항이 "법 제37조제1항제7호"로 변경(2017.4.)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조문(산업→ 산업・유통, 공업→공업・유통・물류)을 변경함.
- 조례 인용 법률의 현행화는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로 인한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법률정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임.
- 다만, 용도지구 체계 정비를 위해 국토계획법이 2017년 개정됐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바, 향후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도록 주의가 요구됨.

⁵⁾ 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법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u>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u>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일부 조문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용어의 변경이 누락된 바 이를 반영해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장 <u>산업개발진흥지구 및</u>	제3장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u>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u>	<u>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u>
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 ①	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 ①
(생 략)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u>산업개발진</u>	② <u>산업·유통</u>
<u>흥지구는 공업기능</u> 중심의 권장업종	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ㆍ
을 유치·육성하고, 특정개발진흥지	<u>물류기능</u>
구는 <u>비공업기능</u> 중심의 권장업종을	<u>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u>
유치・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	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
성화를 도모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일부 조문의 용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바 이를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공업기능은 공업 기능 및 유통・물류기능 등으로 용어를 수정함(안 제3장의 제목, 안 제11조제2항). Ⅵ.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Ⅲ.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전략신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인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315 제안년월일 : 2022년 12월 20일

제 안 자: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조문의 용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바 이를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공업기능은 공업 기능 및 유통・물류기능 등으로 용어를 수정함(안 제3장의 제목, 안 제11조제2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장의 제목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으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으로, "비공업기능"을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장 <u>산업개발진흥지구</u>	제3장 <u>산업개발진흥지구</u>	제3장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	<u>지정·운영 등</u>	<u>지정·운영 등</u>		
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	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	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등) ① (생 략)	· 운영 등) ① (생 략)	・운영 등) ① (개정안		
		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2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	<u>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u>		
<u>업기능</u> 중심의 권장업	<u>업기능</u> 중심의 권장업	<u>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u>		
종을 유치・육성하고,	종을 유치・육성하고,	<u>•물류기능</u>		
특정개발진흥지구는 <u>비</u>	특정개발진흥지구는 <u>비</u>			
<u>공업기능</u> 중심의 권장	<u>공업기능</u> 중심의 권장	<u>거기능, 공업기능, 유통</u>		
업종을 유치・육성함으	업종을 유치・육성함으	·물류기능 및 관광·		
로써 지역경제의 활성	로써 지역경제의 활성	<u>휴양기능 외의 기능</u>		
화를 도모한다.	화를 도모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생 략)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공업기능"을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 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산업개발진흥계획"을 "산업·유통개발진흥계획"으로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진흥지구 지정"을 "진흥계획 수립"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으로, "비공업기능"을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후단 중 "지정된 진흥지구를 변경"을 "선정된 지정대상지를 변경

또는 취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지정된 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하여 지정 신청과 함께 진흥지구 심의위 원회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일"을 "지정대상지 선정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지정대상지의 선정 및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지정대상지의 선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u>제37조</u>	<u>제37조</u>
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u>제1항제7호</u> 및
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라 <u>공업</u>	공업
<u>기능</u> 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기능 및 유통・물류기능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5. "특정개발진흥지구"란 법 <u>제37조</u>	5 <u>제37조</u>
<u>제1항제9호</u>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u>제1항제7호</u>
31조제2항제8호바목에 따라 주거	
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를 말한다.	
6. " <u>산업개발진흥계획</u> 및 특정개발	6. <u>산업·유통개발진흥계획</u>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이란 <u>산업개발진흥지구</u> 및	<u>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u>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	

구"라 한다)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육성·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7. "권장업종"이란 입지상 비교우위에 있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 중 해당 진흥지구 내에서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흥지구 지정 시 고시한 업종을 말한다.
- 8. ~ 13. (생 략)
 제3장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
 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
 ① (생 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개발 진흥지구는 공업기능 중심의 권장 업종을 유치・육성하고, 특정개발 진흥지구는 비공업기능 중심의 권 장업종을 유치・육성함으로써 지 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③ ~ ⑤ (생 략)
 - ⑥ 시장은 직접 또는 제4항의 규정 에 따른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 정대상지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4

.
7
<u>진흥계획 수립</u>
.
8. ~ 13. (현행과 같음)
제3장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
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산업·유통개</u>
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ㆍ
물류기능
- <u>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u>
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
<u> </u>
6
~

조의 규정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 된 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⑦ <신 설>

제12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제11 조에 따라 시장이 진흥지구를 지정 할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 1. ~ 7. (생략)
- ② (생략)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흥지구 지정일로부 터 1년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u>선</u>	정된 지정대상지를 변
경 또는 취소	

⑦ 시장은 지정된 진흥지구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진흥지구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 7.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 지정대상지 선 정일----- 제출하여야 --

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 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 략)

1. 진흥지구 <u>지정대상지의 선정 및</u>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

<신 설>

<u>2</u>. ~ <u>4</u>. (생 략)

② ~ ⑧ (생 략)

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 1. ----- <u>지정대상지의 선정·변경</u>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2.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
 -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와 같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